

---

# 인간 지성과 Data기반 학습전문가 양성팀 운영 규정

---

2020. 09. 01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명칭 및 소재)

본 사업단은 인간 지성과 Data기반 학습전문가 양성팀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이라 하며, 한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설치한다.

### 제2조(목적)

본 규정은 본교 BK21플러스 사업 “인간 지성과 Data기반 학습전문가 양성팀”의 교육, 연구, 장학 및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.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및 산학협력단 BK21플러스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.

### 제4조(연구윤리 확립)

- ① 본 사업단의 장 및 참여교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적극 장려해야한다.
-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교수, 산학협력 전담인력,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조직

### 제5조(조직 및 기능)

- ① 본 사업단의 참여대상자는 본교 교육공학과 소속의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.
- ② 사업단의 구성원은 1항에 의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사업단에서 임용한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.

### 제6조(참여교수)

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다음 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.

-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『고등교육법』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(이하“교수”라 한다)로 하며,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.
- ② 교육부 훈령 제171호, “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” 제24조에 의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(논문지도 등)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.
  - 휴직,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
  -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,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인 교수
  -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
- ③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  -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
  -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  -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### 제7조(참여교수의 평가)

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는 과제 연차별로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팀 수행 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.

- ① 참여교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호를 따른다.
  - 논문 및 학술발표 60점: 국제 논문(20점), 국제학술대회 발표(15점), 국내 논문(20점), 국내학술대회발표(5점)
  - BK21플러스 사업 참여율 평가 20점

- 외부 연구 및 학술회의 발표 등 기타 활동 20점

### 제8조(참여대학원생)

1.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.
  -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석사과정, 박사과정 그리고 석·박사통합과정의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  -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 대학원생
    -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대학원생
    -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
  - ②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대학원생 지원비, 국제협력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.
  - ③ 자격증 대여, 명의 도용 형태의 변칙적 행위가 있는 경우나 학점 취득이 가능하지 않는 인턴, 파트타임업무 그리고 교환학생 등 해외체류 시 전일제 대학원생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없으며, 군위탁생과 산학협동 과정생은 전일제인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만 인정된다.
2.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항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.
  -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졸업 후 경제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이를 위해 사업단은 이러한 사실을 참여대학원생에게 공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받기 위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### 제9조(참여대학원생의 평가)

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.

- ① 참여대학원생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호를 따른다.
  - 논문 및 학술발표 55점: 국제 논문(20점), 국제학술대회 발표(15점), 국내 논문(15점), 국내학술대회발표(5점)
  - 학업계획에 대한 참여교수 또는 사업팀장 면담 25점
  - BK21플러스 사업 참여율(참여지도교수 평가 및 기타 활동 20점)

### 제10조(지원대학원생)

-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.
- ②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여대학원생과 교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실별 장학금 총예산을 결정하고, 이에 따라 지원대학원생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.
- ③ 지원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  - 석사과정 월 70만 원 이상 지급
  - 박사과정 월 130만 원 이상 지급
  - 박사수료과정 월 100만 원 이상 지급
- ④ 지원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연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.

### 제11조(신진연구인력)

- ①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사업단장은 관련 상위규정 및 학내 규정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며 참여 교수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-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,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.
  - 대학(본·분교 포함)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
  - 타 대학(본·분교 포함) 및 기관 소속 휴직자
  - 타 대학(본·분교 포함)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
- ④ 신진연구인력 채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- ⑤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.
- ⑦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BK21PLUS 인건비 예산 내에서 퇴직금 및 4대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등)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.

### 제12조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,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참여교수 및 기타 운영위원회의 참여가 결정된 인원은 운영위원으로 한다.

-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운영의 제반 사안을 심의·의결하며,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신진연구인력 임·면 및 상벌, 업무분장에 관한사항
  - 연도별 세부업무계획의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, 재/행정지원의 효율성 검토
  -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⑤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단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  -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의 회계업무 및 운영비, 인건비의 지출
  -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변경
  - 일상 행정업무
  -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위임사항
- ⑥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으나 각 운영위원의 일정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가 어려운 경우, 사업단장은 회람의 형태로 운영위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#### 제13조(사업비 편성)

사업단은 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, 대학 내부의 승인에 따라 항목간의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. 단, 예산 변경 시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며,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다.

#### 제14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

본 사업단에 소속된 지도교수의 전일제 참여대학원생 중 인원을 선발 하며, 참여대학원생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업단 내부 평가표에 따라 선발하여 지원토록 한다.

#### 제15조(성과급)

성과급 대상은 본 사업단 참여 교수의 운영상 지원 성과급으로 본 사업단의 참여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.

- ① 성과급은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사업팀 수행 기여도를 종합하여 차등 지급한다.
- ② 책정된 성과급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 비율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 다만 1인당 연 480만원을

초과할 수 없다.

- ③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단장이 최고 10%까지 추가 부여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(국제학술대회 지원)

- ①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참여교수가 추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.
  - 국제학술발표 논문 저자 또는 발표자로 지정된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
  - 교수의 경우 지도학생의 발표논문 저자로서 참여 하는 경우 지원
  -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
  - 국제학회 규모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(4개국 이상,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, 총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기간 소속 외국인이 50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학술대회 발표자 위주로 지원하되, 단순참가자도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. 단, BK규정에 맞춰 단순참가자는 학술대회당 3명이 초과할 수 없다.

#### 제17조(해외석학 초빙)

- ① 해외석학초빙의 경우 해외학자 및 전문가, 유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사업단 참여교수들 내부 회의를 통해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, 자문 등의 활동 및 세미나/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.
- ③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와 체제비(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)를 지원한다.

#### 제18조(사업단 운영비)

총 사업비의 10% 이내 또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, 지원항목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

#### 제19조(간접비)

간접비는 사업비 총액의 5% 미만으로 편성된다.

## 제 4 장 기타

### 제20조(기타사항)

참여인력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사업단에서 구비한다. 기타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 규정(교육부/한국연구재단)을 따른다.

## 부칙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경과조치)

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